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798 제출연월일: 2024. 10. 21.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입 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 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 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1년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	②
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l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1년 이상</u> 영업을 하지 아니한	2. <u>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u> -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